

닭고기 자조금, 누구의 부담인가?

계육산업은 지금 의무자조금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까지는 계육협회 중심으로 임의자조금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제는 의무자조금사업이 순조롭게 도입되어 계육산업이 이 시대에 적응, 생존,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그런데 의무자조금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닭고기 자조금은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의 논란이 있을 듯 싶다. 사육자 부담 또는 계열주체 부담을 놓고 이견이 난무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금후 자조금의 기본원칙과 관계법률, 그리고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얻어내면 될 줄 안다. 아래에 계육자조금 조성과 관련된 사항 몇 가지만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조금조성에 있어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는 사육농민이 생산물(육계)을 팔 때마다 그 거점(유통시장 또는 도계장)에서 공제, 부담(생산물판매 대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상적으로 그 대금은 사육농민 소유의 육계판매

대금이고 그 농민의 농장경영 결과인 매출수입이라 할 수 있다. 자조금은 원래가 농장사육의 문제보다는 사육 이후의 가공, 유통, 소비문제와 연관된 공동활동의 자금이므로 농가의 생산원자재 구입과정보다는 생산물판매 수입과정과 연계하여 부과시키게 된다.

둘째, 자조금거출 원칙은 그렇다해도 계육의 경우는 계열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그 이유는 계육산업 구조가 고도의 통합경영(계열주체와 사육주체간의 계약에 의한 합동경영 시스템) 주도적(integrated system oriented)이므로 사육농민은 사육자 보수(사육자의 토지, 시설, 노력, 일부자재의 비용에 대한 지불, 속칭 사육수수료)만이 수입이고 생산물(도계육 이후의 상품) 판매수입은 계열주체 몫이라는 논리에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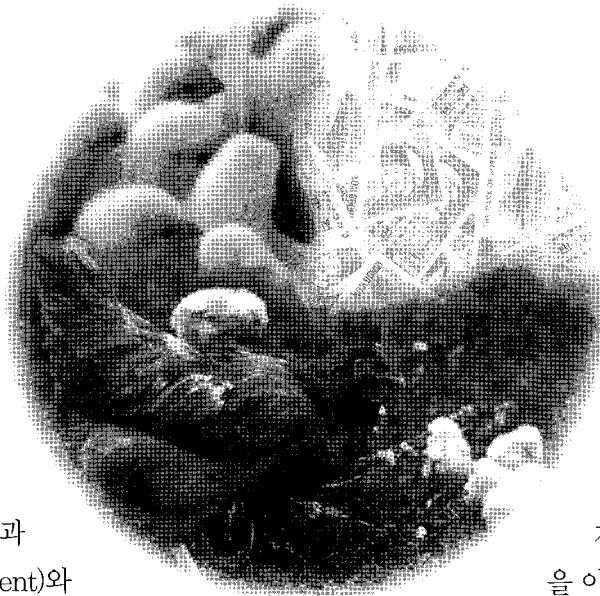
위 두 경우만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첫째인 사육농민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어 둘째인 계열주체 부담이라면 대의원, 관리위원 등 농민대표성의 타당여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만일 계열주체의 부과액에 비례한 당해 계약농민의 대표

선임을 주장할 경우에도 계열주체의 이의가 있게 된다.

여기서 후방부과(backward assessment)와 전방부과(forward assessment)

의 과제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전자는 사육주체, 후자는 계열주체의 부담을 말하는데 두 가지 모두 양측의 공감이 쉽지 않다. 미국의 낙농산업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끝에 현재는 낙농가(원유판매자)가 부담하는 자조금(연간 2억6천만불)과 유업체(계열주체 아님)의 자조금(연간 1억2천만불)을 따로 조성하여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균형있게 쓰고 있다.

이밖에도 고려/논의 사항이 많으나 당사자와 관계자의 광범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면 될 것이다. 설령 사육주체(독자 사육자 포함)가 부담한다 해도 개별농가 부담은 극소액이지만 정부지원과 기타 추가 요인에 의한 자조금사업 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주체 부담일 경우도 최종계육상품의 원가상승으로 감지될 수준이 아니다.



통합경영이 99% 인 미국의 계육산업은 현재 자조금사업이 없다. 계열주체의 제품개발이나 상표홍보가 주종을 이루고 계육협회는 전국계육요리경연대회에 연간 50만불(계란자조금 2천만불) 정도 쓰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닭고기 의무자조금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계육산업은 지금 위기에 쌓여 있다. 당장 닭값이나 소비증대의 문제뿐 아니라 질병을 비롯한 전체적인 생산성 저하의 문제, 점증하는 계육수입의 문제, 타 경쟁제품(육류)과의 시장 점유율 문제, 그리고 국내 생산량, 특히 자급률의 문제(생산자재를 비롯한 관련산업 모두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산업의 당면, 금후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데도 자조금은 유용하게 쓰여져야 한다. C

박영인 이사장
(사)한국자조금연구원

